

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정관

제정 2016.06.29.

개정 2018.07.06.

개정 2019.03.11.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법인은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「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에 따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정책을 개발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업무를 체계적, 전문적으로 지원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) 이 법인은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이라 한다.

제3조(사무소의 소재지) 재단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둔다.

제4조(사업의 범위)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개발 및 분석, 종합계획 수립의 지원
2. 서울특별시립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운영 지원, 컨설팅 및 통계 구축
3.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 관련 사업 개발·보급
4. 시립병원, 보건소 등 종사자 교육훈련
5. 생애주기별, 성별 공공보건의료서비스 발굴
6. 국내외 공공보건의료자원 연계, 교류 및 민간 보건의료자원과 협력체계 구축
7. 시립병원, 보건소,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공동사업 개발 및 운영
8. 시장이 위탁하는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 관련 사업
9. 기타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
제5조(수익 및 대행사업) ①재단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
②재단은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,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. <신설 2018.7.06>

[제목개정 2018.7.06]

제6조(공고방법) 재단이 공고·고시할 사항은 당해 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한다. <개정 2018.7.06>

제 2 장 임원 및 직원

제7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 재단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

1. 이사장 1명
2. 대표이사 1명
3. 이사 6명 이상 10명 이하(이사장 및 대표이사 포함)
4. 감사 2명

제8조(임원의 임면) ①임원은 제10조의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되, 이사장·대표이사·감사·선임직 이사는 시장이 임명한다. 단, 조례 또는 정관에 의해 당연히 임명되는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공모 및 추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8.7.06>

②대표이사는 상근으로 하고, 이사장과 나머지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하되, 비상근이사에는 공공보건의료분야 전문가 중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, 시립병원장, 보건소장, 보건의료분야 시민단체 활동가, 보건의료분야 직능단체 종사자를 포함한다. <개정 2018.7.06>

③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1.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장
2. 서울특별시 재정기획관

④감사는 보건의료정책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, 1명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시장이 임명한다.

⑤시장은 대표이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 해임할 수 있다. <신설 2018.7.06>

제9조(임원의 임기)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,

경영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근로자 이사는 임기종료 등으로 결원 발생 시 법에서 정하는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등에 따라 임명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7.06, 2019.03.11>

②당연직 이사와 당연직 감사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한 때에 만료되며 후임자가 승계한다.

③임기 중에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 그 후임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새로이 기산한다.

④제1항에 의해 임원이 연임할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비상임이사 및 비상임감사를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 <신설 2018.7.06>

제10조(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) ①재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재단에 임원추천위원회(이하 “추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.

1. 시장이 추천하는 자 2명
2. 서울특별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3명
3. 재단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2명

②서울특별시 공무원인 당연직 이사는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
③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.

1. 경영전문가
2. 공공보건의료 분야 전문가
3.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
4. 공인회계사
5.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6. 재단의 고유목적사업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 <개정 2018.7.06>

④기타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해 재단의 내규로 정한다.

제11조(임원 후보의 추천절차) ①추천위원회가 임원 후보를 추천하려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정 결원 직위에 대하여 2배수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7.06>

②임명권자는 추천된 임원 후보가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재단의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추천위원회에 임원후보의 재추천을 요구

할 수 있다.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지체 없이 임원 후보를 재추천하여야 한다.

제12조(임원의 직무) ①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. 다만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제8조 제3항 각 호의 당연직 이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이사는 이사회에 부의한 의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한다. <개정 2018.7.06>

④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며, 유고시에는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. <개정 2018.7.06>

제13조(직원의 임면) ①재단의 직원은 대표이사가 임면한다.

②직원의 임용은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직위·직무분야에 대하여는 우수 전문 인력 및 유경험자를 경력경쟁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다.

③직원의 임면, 승진 등 필요한 사항은 재단의 내규로 정한다.

제14조(임·직원의 복무) 임·직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단의 내규로 정한다.

제15조(임·직원의 겸직제한) 재단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, 상임임원은 시장의, 직원은 대표이사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.

제16조(임·직원의 보수) ①재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의 보수는 보수규정에 의한다.

②비상임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장이 지정하는 당연직 이사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8.7.06>

제17조(비밀누설의 금지 등) 재단의 임·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이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. <개정 2018.7.06>

제18조(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) 재단의 이익과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의

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재단을 대표하지 못한다. <개정 2018.7.06>

제19조(대리인의 선임) 대표이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회의결을 거쳐 임원 또는 직원 중에서 재단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.

제20조(임원의 결격사유)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. <개정 2018.7.06>

1. 삭제 <2018.7.06>
 2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 3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 4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<개정 2018.7.06>
 5.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 6.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7. 재단과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 <신설 2018.7.06>
- ②재단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. <개정 2018.7.06>
-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. <신설 2018.7.06>

제21조(임원의 해임)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.

1.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2. 임원간의 분쟁·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3. 재단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4. 재단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하거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
5. 민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

제 3 장 조직 및 정원

제22조(조직 및 정원) ①재단의 조직은 별표1, 정원은 별표2와 같으며,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직제 및 정원규정으로 정한다. <개정 2018.7.06>
②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.

제 4 장 이 사 회

제23조(설치 및 구성) ①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.
②이사회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18.7.06>
③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제24조(의결사항)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재단의 기본운영방침에 관한 사항
2.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
3.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
4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5. 조직,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
6. 제규정의 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
7.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
8.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
9. 재단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
10. 법령, 조례,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11.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
12. 기타 이사장이 이사회에 부의하는 사항

제25조(이사회 의 소집) ①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며, 이사장이 소집한다. <개정 2018.7.06>
②정기 이사회는 연 2회 소집한다.
③임시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과반수가 요청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.
④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에 그 목적을 명시하여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회의 개최 15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7.06>

⑤이사장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당과 경비 등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.
〈신설 2018.7.06〉

제26조(의결방법)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〈개정 2018.7.06〉
②이사장은 표결권을 가지며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.
③ 삭제 〈2018.7.06〉

제27조(서면결의) ①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에서 업무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관하여 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결의로 의결할 수 있다.〈개정 2018.7.06〉
②이사장은 제1항에 의한 서면 의결사항은 제25조의 절차에 따라 소집된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28조(이사회 참여제한) 이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.
1. 이사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
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와 관련하여 자신과 재단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
〔전문개정 2018.7.06〕

제29조(의사록)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이사와 감사의 기명·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.
〔전문개정 2018.7.06〕

제 5 장 위 원 회

제30조(설치)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위원회 또는 기구를 둘 수 있다.

제31조(운영) 위원회 또는 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

제 6 장 재산 및 회계

제32조(재산) ①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 <개정 2018.7.06>

②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8.7.06>

1.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
2. 설립 후 정부, 지방자치단체, 기타 법인 및 개인의 출연금 또는 토지·건물 등의 부동산
3.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결산상 잉여금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도록 의결한 재산

③재단의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시의 출연금, 기금운용과 관련한 이자수익금, 위탁사업수입금, 법인사업수입금, 기타수입금 등으로 구성하며, 재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보통재산에서 충당한다.

제33조(재산의 관리) ①재단의 대표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재단의 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.

②재단이 기본재산을 매도, 증여, 교환,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34조(기금) ①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 <개정 2018.7.06>

②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의 출연금 <개정 2018.7.06>
2. 중앙정부의 지원금 <개정 2018.7.06>
3. 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저촉되지 아니한 금융기관 및 기업 등 민간의 출연금 <개정 2018.7.06>
4. 삭제 <2018.7.06>
5. 기타 기본재산의 운용 및 재단수익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입금

③기금의 운영·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 <개정 2018.7.06>

④ 삭제 <2018.7.06>

⑤재단은 기금의 원금을 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신설 2018.7.06>

⑥기금은 적립계정과 운용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한다. <신설 2018.7.06>

제35조(사업연도)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. <개정 2018.7.06>

제36조(사업계획과 예산) ①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.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〈개정 2018.7.06〉

②제1항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득한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 〈신설 2018.7.06〉

③재단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〈신설 2018.7.06〉

제37조(결산) ①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를 당해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18.7.06〉

②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〈신설 2018.7.06〉

③재단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 〈신설 2018.7.06〉

1.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·지출 결산서 1부
2.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

제38조(손익금의 처리) ①재단의 세입세출결산 결과 발생한 잉여금은 이사회 승인을 거쳐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월 또는 유보한다.

②재단의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 승인을 거쳐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후,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준비금 등으로 적립한다.

③재단의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에 따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 승인을 거쳐 준비금으로 이를 보전하고, 부족할 때에는 이월한다.

제 7 장 보 칙

제39조(정관변경)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,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 〈개정 2018.7.06〉

제40조(해산)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

제41조(잔여재산의 귀속) 법인 해산시 잔여재산은 이사회 의결과 시장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서울특별시 또는 목적이 유사한 법인이나 단체에 기증한다. <개정 2018.7.06>
[제목개정 2018.7.06]

제42조(시행규정) ①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.
②직제 및 정원규정을 제정 또는 개·폐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<개정 2018.7.06>

부 칙<2016.6.29.>
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소관 주무관청의 재단설립 허가를 받아 법원의 등기를 필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사업연도) 재단의 설립연도에 속하는 사업연도는 설립 등기일부터 당해 연도말까지로 한다.

제3조(사업계획 등) 재단의 설립연도에 속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서는 재단 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4조(경과조치) ① 재단의 설립 이전에 재단설립 추진위원회나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본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.
② 제8조제3항과 관련하여 최초 대표이사 선임 시까지의 대표이사의 직무는 시민 건강국장이 대행한다.

제5조(조례 또는 직제 개·폐 등에 의한 적용) 제8조의 당연직 이사는 조례 또는 서울특별시 직제의 개·폐 등으로 변경된 경우, 그 직명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〈2018.07.06.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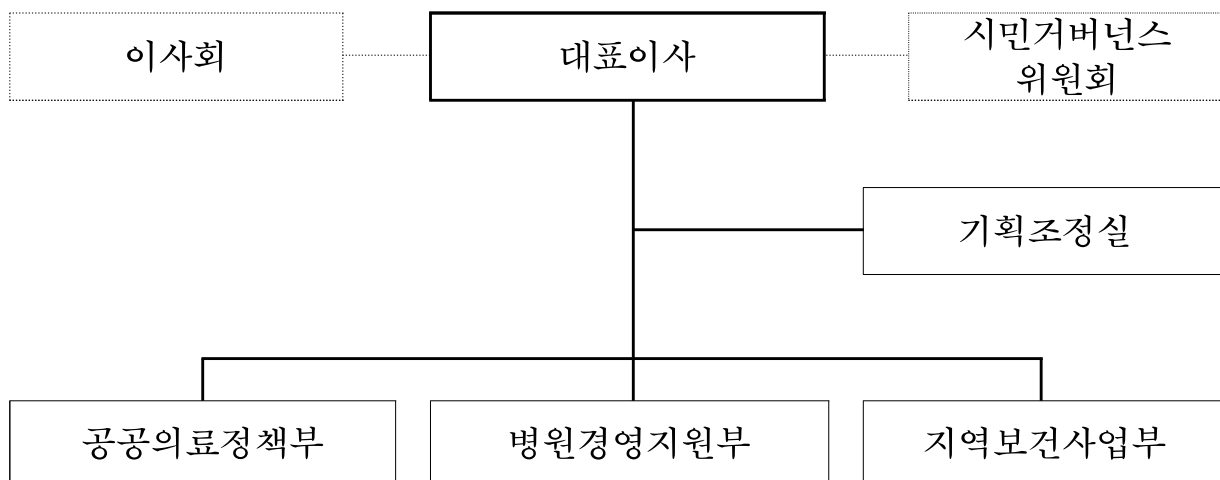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〈2019.03.11.〉
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〈별지 1〉 삭제 〈2018.7.06〉

〔별표1〕 공공보건의료재단 조직〈신설 2018.7.06〉



〔별표 2〕 공공보건의료재단 정원〈신설 2018.7.06.〉 〈개정 2019.03.11.〉

구 분	계	임원	1급	2급	3급	4급	5급
계	30	1	4	4	5	8	8
임원	1	1	-	-	-	-	-
일반직	6	-	1	1	1	2	1
연구직	23	-	3	3	4	6	7